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개정연혁

- 2008년 11월 28일 제정 (이사회 의결)
- 2012년 7월 11일 개정 (이사회 의결)
- 2012년 11월 27일 개정(이사회 서면결의)
- 2016년 6월 22일 전면개정 (이사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함) 회장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피선거권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인 선거인이라 함은 협회 정관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후보자 명부 및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무이사가 임명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후보자등록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방 사항을 선거일 3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사무처 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선거인 및 그 명부 작성 등

제6조(선거인단의 구성)

- 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2.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1인(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5인
 4. K2(실업축구연맹)리그, K3 및 WK리그 등록팀 선수 10인
 5. 프로 1부(클래식) 및 2부(챌린지) 리그 등록팀 선수 28인
 6. 축구동호인 선수 20인
 7.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8.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9.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0.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1. K2(실업축구연맹)리그, K3리그,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9인
 12. 프로 1부(클래식)리그 및 2부(챌린지)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15인
 13. 1급, 2급, 3급 및 4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한 심판 8인
 14.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구연맹·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7인
- ② 선거인은 추첨 대상자 기준일에 만 19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협회로부터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자격정지 집행중인 자
 2. 협회로부터 제명된 자

제7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단체에게 선거일 전 30일까지 배정된 선거

인 수의 5배에 해당하는 선거인 후보자를 협회에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단체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배정된 선거인 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협회 등록된 선수, 지도자 및 심판 중에서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14호까지 배정된 각 직군별 인원수의 5배에 해당하는 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위 선거인 후보자 추첨 대상자 기준일은 선거일전 20일로 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대리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예비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의 대리인에 의한 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관 제33조 제1항 단서는 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선거인 및 후보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 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된다.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절차 등

제10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29조에 해당하는 자

2. 정관 2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11조(기탁금 납부절차)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협회 명의의 금융기간의 계좌에 정관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입후보 시 그 입금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기간)

- ①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3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3조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서류)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기탁금 또는 기탁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접수증의 교부 및 등록 후보자 현황 공고 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한 회장 후보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회장 후보자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등록무효)

- ① 후보자등록 후에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이 무효인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선거일)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일전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 그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4. 선거일에 하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투표는 선거인 1인에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25조(투표 및 개표 참관인)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인의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③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④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 ① 선거 또는 당선인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투표록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당선자결정 등

제28조(회장 당선인의 결정방법 및 결정)

선거의 개표가 종료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그 밖의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16.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 제정 전에 존재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후 실시되는 첫 회장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 시기,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일, 회장 선거 공고일, 선거인 명부 작성일,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기간 및 선거 관련 판단 기준일을 단축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축구동호인 선수에 대한 특칙)

- ① 제6조 제2항 제6호의 축구동호인 등록팀 선수라 함은 2016. 1. 1.부터 추첨 대상자 기준일까지 협회 주최 전국대회 및 17개 시도연합회 또는 16개 시도축구협회 주최 대회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 ② 위 제1항은 2016년 회장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4조(2016년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

① 2016년에 실시되는 제53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제6조에 의하지 않고 본 조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 규정 제7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선거인 후보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2. 각 시도축구협회 또는 시도연합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인
3.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3인
4. K3리그 등록팀 선수 2인
5.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 선수 2인
6. WK리그 등록팀 선수 2인
7. 프로 1부(클래식) 및 2부(챌린지) 리그 등록팀 선수 9인

8. 축구동호인 선수 6인
9.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0.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1.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2.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4인
13. K3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4.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5.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6. 프로 1부(클래식)리그 및 2부(챌린지)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8인
17. 1급, 2급, 3급 및 4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된 심판 2인
18.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구연맹·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3인

② 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을 추천해야 하는 시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회에 추천해야 한다.

1.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 결의 당시 시도축구협회장이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해산결의 당시 시도연합회의 임원이었던 자
2.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 결의 당시 시도연합회장이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협회의 임원이었던 자
3.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 결의 당시 시도협회장 및 시도연합회장이 아니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협회와 시도연합회별 추천된 임원 각 5인을 재추첨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자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협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각 시도협회 별로 1인을 본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인을 선정하여 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구)시도축구협회와 (구)시도연합회가 양 단체를 통합하여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거나, 통합을 하여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 구성원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회장 후보자 등록마감현황 공고
- 년 월 일 시

3. 회장 선거일시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년 월 일

(사)대한축구협회 회장 ○ ○ ○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 업 :
- 연 락 처 : (주택:) (직장:)
(핸드폰:)
- 이력사항 : 첨부(여권사진 2매 포함)
- 추천사항 : 첨부(추천서 포함)

상기 본인은 대한축구협회 제○○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사)대한축구협회 귀중

제〇〇대 회장선거후보자 등록부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제○○대 회장선거후보자 접수대장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 절 취 선 -----

접 수 증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대한축구협회 회장 (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제00대 회장선거 개표 결과 보고

□ 개표결과

선거인수 :

기 권 :

투표자수 :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1.0000

2.0000

위와 같이 개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감표위원 (인)

감표위원 (인)

감표위원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대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
제○○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당선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사)대한축구협회